

정 변호사의 ‘죄와 벌’ 구치소 접견 가는 길

정재민
변호사·작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 접견을 가는 날이다. 차를 몰고 서초동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예술의전당 앞 지하 터널로 파고들어 과천을 관통한 다음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틀어 의왕으로 향한다. 원래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지만, 구치소에 가는 길 위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묵직한 자동차처럼 착 가라앉는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구치소로 접견하러 갈 때다. 접견은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가족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 구치소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 밖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리케이드가 올라가고 차를 구치소 뒤편에 주차할 수 있다.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조차 하루에 면회는 10분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원칙상 시간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사 신분증과 함께 휴대폰·노트북·휴대폰 같은 물건을 다 맡기면 창구에서 패스를 건네어준다.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옆으로 열리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 또다시 흰색 문이 스르륵 열린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도깨비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곧바로 캐나다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나도 흰색 문을 통과하면 교도소 안이라는 낯선 세계의 영토로 순간 이동을 한다. 요즘 날이 풀려서 뜰 위로 내리쬐는 햇볕마저 낯설도록 한것지나, 이곳은 더더욱 세상과 괴리되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안 알았다면 즉각 석방
접견실 문 앞에는 수문장처럼 교정공무원들 너댓 명이 책상에 앉아서 접견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변호사가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교정공무원은 마이크로 해당 수용자를 부른다. 마치 판문점의 분계선을 넘어가듯 간단하게 접견실 문턱을 넘자마자 그토록 철저히 격리된 세계에 살던 수용자를 마주하고 약속을 하게 된다. 접견을 갈 때마다 마주하는 수용자의 표정은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환하게 불이 켜진다. 종일 갇혀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갑겠지만 변호인은 수용자의 죄의 무게를 좌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는 것 외에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반드시 이런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에른есто 미란다(Ernesto Miranda)’의 이름을 딴 것이다. 미란다는 체포된 직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썼는데, 연방대법원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구금된 사람은 곧바로 석방되고 그동안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도 효력을 잃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된다.

변호인의 중요성은 체포나 구속을 당해보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누구나 체포나 구속을 당하면 두렵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던 사람도, 전화기도 컴퓨터도 돈도 명함도 빼앗긴 채 변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좁은 공간에 수감되어 버리면 무기를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구금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구금된 것인지,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이러



2013년 개봉해 큰 주목을 받은 영화 ‘변호인’. 송강호가 연기한 변호사 송우석(오른쪽)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장면.

〈중앙포토〉

변호사 선임 정하는 첫 접견 배우자 찾는 맞선 만큼 중요

밖에서 아무리 잘나가도 갇히면
전쟁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

죄의 무게 좌우할 조력자 결정
전관예우보다 소통·성실성 봐야

1심 변론한 20대 피고인 작별 만남
개인사 깊은 얘기 나누며 웃기도



영화 ‘베테랑’에서 경찰 서도철(황정민)이 재벌3세 용의자 조태오(유아인)를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가망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체포나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영장심사·보석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도 외국어로 글 쓰고 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분노와 공포, 무력감 등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법률가 본인이 구속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인이다.

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대신 구해주겠지만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수용자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서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한다. 나도 간간히 편지를 받는다. 변호사가 되면 손편지를 이렇게 자주 받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첫 접견은 수용자와 변호사가 맞선을 보는 셈이다. 물론 접견은 남녀의 맞선보다 심각하고 무겁지만 본질적으로 닮은 점도 꽤 있다. 첫째, 접견도 맞선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인연을 찾는 일이다. 둘째, 결혼 생활도 재판도 함께 길을 가보기 전에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셋째, 일단 함께 길을 떠나고 난 뒤에는 원상대로 무르기가 매우 어렵다. 어쩌면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것보다 접견을 통해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좋은 배우자감은 한 번 보고 확신이란 들면 거듭 만나보면 되고 연애를 해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접견을 거듭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접견을 가보면 기존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 서면이 너무 부실하다, 상담 이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전관예우가 통하는 변호사를 찾

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몇 번 재판받고 감옥 가보니 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을 실제로 열심히 해주고 글을 잘 쓰는 변호사가 좋더라고 하는 분도 있다. 후자가 맞는 말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변호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는 1년차 어소변호사는 파트너 지도를 전혀 받지 않은 채 1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혼자서 60~70건씩 진행했다는 어소변호사들도 많다. 평균 수입료가 낮아지면서 수입을 위해 단가를 낮추는 대신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수입을 하는 것이다. 내 경험상 간단치 않은 사건 20건을 충실히 진행하고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구치소에 가서 접견했는데 좋은 대화를 해서 좋은 기분이 좋았다. 내가 1심을 변호했던 20대 피고인인데 본인이 어머니의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국선변호사와 항소심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로서도 굳이 그를 접견할 필요도 없었지만 작별 인사를 간 것이었다. 나는 결과가 좋은 나쁜 사건이 끝나고도 고객을 보는 편이다.

고작 30분 정도의 짧은 접견인데 왜 기분이 좋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이십 대의 친구는 얼굴이 확연히 좋아져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얼굴이 어둡고 어깨가 꾸부정하게 굽았는데 이날은 아이돌처럼 빛나고 말을 할 때 나와 눈도 또렷이 맞추면서 입가에 미소도 흘렸다. 걸어진 머리칼이 스타일러시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면도기로 잘랐다고 했다. 멋있다고 하자,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다. 정신적 힘이 더 생겼구나, 이곳에 더 적응했구나 싶었다.

어두웠던 피고인 얼굴 환하게 빛나

1심 재판을 받은 소감이 어떤지 물으니, 구형량의 절반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만족한다고 했다. 내가 열심히 변론해주었고 풍부하고 정교한 서면을 써주어서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접견을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우리는 연속하게 진행되었던 재판 중에 각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판장의 말투나 진행방식에 대한 인상평도 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은 위증을 했다면서 흥도 같이 보면서 같이 몇 번 웃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자주 소통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는 모친의 건강을 걱정했다. 나는 항소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을 주장해보라고 조언하고 미리 준비해간 요지를 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불췌, 자신의 개인사를 말했다. 그 전에 사업을 크게 해보려다 코로나 때문에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급히 만회하려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른 공동피고인의 가족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간혀서 해명할 기회가 없이 오해만 받고 있었으니 오죽 답답했을까 싶었다. 나는 부디 항소심에서는 더 좋은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그는 접견실을 나가면서 몸을 비켜서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씩 웃었다.

감사와 칭찬과 신뢰의 표현이 오가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오해받는 부분을 털어내고 개인사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몇 차례 웃었으니 어찌 좋은 대화가 아니겠나. 구치소에서든 좋은 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구치소보다 더 좋은 곳에서 대화하는 게 좋겠지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정재민 23년 공무원 생활 중 절반은 판사로, 절반은 법무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에서 일했다. ‘보heim안팎소디(세계문화학수상작)’ 등의 소설과 ‘범죄사회’, ‘혼란판사’ 등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 사건을 주로 변호하고 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